

秘

選舉權年齡 引下主張에 대한 檢討 意見

87. 8

1. 選舉權年齡 引下主張의 根據

- 現代社會의 早期教育, 就業年齡引下 추세와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 접촉의 신속화로 政治的 意識形成이 빨라졌으므로 선거권연령을 18세로 인하하여 參政權의 폭을 확대하여야 함
- 민법에서는 성년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18세이상이면 公務員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公務擔任權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들 연령층에게 선거권도 부여하여야 됨
- 미국·영국·서독 등 대부분의 소위 정치선진국에서도 18세이상의 연령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參政權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도 이에 따라야 함

2. 選舉權年齡 引下主張에 대한 檢討

- 선거권연령은 그 나라의 政治文化的 背景, 慣習 및 法律體系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임
-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 내지 대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들은 아직 社會的 經驗이 不足하고 政治的 判斷能力도 크게 未熟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오도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고등학교 캠퍼스까지 選舉熱風에 휩싸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임

- 모든 權利에는 그에 상응하는 義務와 責任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國政에 參與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인정하는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納稅와 兵役의 義務가 부과되는 연령과 균형을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인 바,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의무와 병역의무의 기준은 20세이므로 선거권연령만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
- 민법상 성년연령은 20세로서 20세미만인 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私法上の 法律行爲의 效果는 그 행위주체와 상대방에 국한되는 데에 반하여 선거권 행사의 적정여부는 전 국가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선거권연령을 민법상 성년연령보다 낮추자는 것은 本末이 顛倒된 주장임
- 18세이상이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하나 공무원임용및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면 8급·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한하여 18세 이상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할 뿐이며, 8급 및 9급중에서도 주체성이 요구되는 교정직·보도직렬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20세부터 주어지게 되며 (규칙 제3조) 또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2년이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임.
더우기 선거권의 경우에는 일정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시험에 의하여 그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일정연령 이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
-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여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선거권연령문제는 각국의 政治文化的 背景과 社會的 慣習이나 慣行, 法律體系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

- 미국·영국·서독·프랑스·이태리 등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나, 오스트리아는 19세로, 일본·스위스·자유중국·뉴질랜드·노르웨이·아이슬란드 등은 20세로, 벨기에·인도·말레이시아 등은 21세로 규정하고 있음 (서양인의 발육·성숙도와 동양인은 다름. 일본·자유중국·인도·말레이시아 등의 例 참조 필요)
- 위와 같이 나라마다 선거권연령을 달리하나 대개 民法上の 成年年齡과 일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는 적어도 私法上の 法律關係 形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선거권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
- 특히 西歐 先進國의 경우에는 소년기부터 獨立性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성년이후까지도 부모의 보호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東洋的 文化背景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社會的 慣習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임
- 또한 教育制度와 教育現實에 비추어 볼 때 서구의 경우에는 취학연령이 우리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치면 곧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지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學制와 入試制度를 비롯한 교육풍토와 사회실정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3학년 내지 대학 1학년정도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임
- 또한 미국의 경우 1970년도에 선거권연령을 18세로 인하하였으나 그 실시는 2년후로 유예하였으며 경제수준만으로 선거권연령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국이 선거권연령을 인하할 당시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비교해 보면 1970년 당시 미국의 1인당 GNP 는 \$5157로서 1986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P \$2271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선거연령을 인하할 시기가 멀었음을 알 수 있음